A+동해노인돌봄센터 장기요양 급여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2. 모집방법

시설 입소자 모집의 경우 특별히 규정과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할 수있다.

① 자체홍보를 통한 모집 .
② 온라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ㅣ관 블로그를 통한 기관 홍보
③ 오프라인: 유관기관 연계협력 등의 홍보를 통한 기관 및 시설입소 서비스에 관한 사항 홍보
④ 기타 : 입소자(보호자). 직원의 지인 등의 소개. 전화상담. 방문 상담

3. 입소대상자

① 장기요양 시설급여 1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②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이 필요한 자

4. 입소 시 구비서류

① 장기요양 인정서류 (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
② 입소 건강진단서 및 코로나 음성 결과서 각1부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의 경우) 1부
④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사본 1부
⑤ 기타 기관 필요서류

5. 입소절차

① 초기면접 :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은 초기 면접 시 입소 희망 대상자와 그 가족을 면담하여 입소 희망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치매와 일상생활기능 정도를 평가 하여 입소여부를 판단한다.
② 입소계약 : 입소가 결정된 입소 희망 대상자는 시설장과 신원인수인에 의한 입소 계약을 체결한다.
③ 입소 및 생활안내 : 입소계약이 체결되면 수급자의 권리 · 의무와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및 입소 생활에 대해 안내한다.

6.입소자 보호 관리를 위한 입소자 수칙

① 입소자는 시설 직원의 수발에 따라 생활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은 타인의 생활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입소자의 외출, 외박은 시설 관리자의 허락과 동시에 보호자 동반 시 허용된다.
④ 입소자는 의사의 진료를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소자는 직원 어느 누구에게나 생활, 식사 등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입소자의 외출, 외박 시 모든 사고에 대하여는 보호자(인솔자)의 책임으로. 시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7.입소자의 책임

시설 입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① 시설과 시설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③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⑤ 종사자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⑥ 혐오물품,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주 있는 물품은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8.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 및 의무

- 서비스제공자(시설)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수급자의 권리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②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 할 권리 ④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⑧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 할 권리
⑨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⑩ 정보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9.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경가능 한다.
③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입소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④ ③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소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단, 시설 정원이나 수급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계약해제

① 입소자(또는 보호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 할 수 있다
②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③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소 처리한다
④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⑥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⑦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③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④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⑤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⑥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 전 입소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할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에 대한 의무
③ 입소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 및 인적사항 변경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⑤ 입소 당사자의 상태변화 시 시설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할 의무
⑥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10.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사항

- 월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 대표자가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이용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급여 본인부담금

①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 ~ 5등급의 의료급여자 및 감경 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8% 또는 12%를 부담한다.
③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④ 급여수가 배치기준률은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한다

< 별첨1. 2024 장기요양급여 수가 상세내역 >

급여 비용 항목에 대한 본인 부담 상세내역 (30일기준)						
등급	1일수가	급여 총액	자부담(20%)	자부담(12%)	자부담(8%)	기초 수급자
1등급	84,240원	2,527,200원	505,440원	303,260원	202,180원	무료
2등급	78,150원	2,344,500원	468,900원	281,300원	187,600원	무료
3~5등급	73,800원	2,214,000원	442,800원	265,680원	177,120원	무료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액	
식재료비	1일 9,000원 (3,000원×3식)
간식비	1일 500원(500원×1회)

■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① 식재료비 : 1일 3식(9,000원×30일 = 270,000원 / 간식 : 1일 1회(500원×30일 = 15,000원)

②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④ 특별보호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보호자)가 부담한다.

-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서비스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 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

② 입소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 부담률이 변경 되었을 때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 되었을 때

④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 비용을 변경 할 때

나 급여비용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이 변경이 확인된 경우 재계약을 진행하고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②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적용 하며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안내 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서면(변경계약서)으로 동의를 받아 급여비용을 적용 한다.

④ 비급여 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변경계약서)으로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적용한다.

- 이용료의 납부방법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입소 당월 이용료는 이용자의 입소가 확정될 때에는 입소일로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 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입소비용을 시설은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호자는 시설이 지정하는 계좌에 익월(다음달) 10일까지 전월의 이용료를 납부(입금)하여야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 부담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